

신구조문 대비표 - 선적서류 및 또는 수출환어음 재매입 거래약정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	<p>제 11조 법규준수와 제재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HSBC 그룹과 동 그룹의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재,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, 뇌물 및 부패, 탈세 방지 등과 관련된 여러 관할권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 2. HSBC는 언제든지 고객에 무역 거래 관련 정보(기본계약서 또는 기타 문서 등)를 즉시 제공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. 3. HSBC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(법규준수 조치)를 취할 수 있으며, 기타 HSBC 그룹 계열사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. 이러한 법규 준수 조치에는 다음 명시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a) 지급, 서신이나 통신 또는 지시서의 차단 및 조사 (b)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 그리고/또는 (c) 다음 명시된 사항을 거절 ;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i) 무역 서비스 발행, 개신, 연장, 이전 및 양도 (ii) 청구권 지급 또는 (iii)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에 어긋나는 무역 서비스 및 지시서 처리 	신규조항
<p>제11조 기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은행간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 2.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. 	<p>제12조 기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약정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은행간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. 2.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30일 사전통지에 의한 서면으로 해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한다. 그러나 서면 해지시에도 모든 미결제 거래에 대한 채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본 약정은 효력을 유지한다. 	조항번호 수정

제12조 개별성	본 약정서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등의 사정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조항만이 무효이고 본 약정서의 다른 조항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제13조 개별성	본 약정서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등의 사정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조항만이 무효이고 본 약정서의 다른 조항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조항번호 수정
----------	---	----------	---	---------